

제 1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2월 15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담당자 : 진미경 문의전화 : 061-540-6822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천 *환 1977-09-29	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조도대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2년 12월 09일

조도면장

